

교무위원회규정

1996.03.01.제정 2001.02.01.일부개정 2011.04.18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
 2013.01.28.일부개정 2018.10.12.일부개정 2020.11.01.일부개정 2021.06.01.일부개정
 2022.04.01.일부개정 2023.09.01.일부개정

<교무팀>

제 1 조 (설치) 본 대학교의 학사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,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)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대학원장, 처장, 학장, LINC3.0사업단장 및 총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위에 속하지 않는 부속기관, 연구소의 장, 사무직의 행정팀장을 참석케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, 2013.1.28., 2018.10.12., 2020.11.1., 2021.6.1., 2022.4.1.)

제 3 조 (임원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 (개정 2011.4.18., 2018.10.12., 2023.9.1.)

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
2. 교수회의 위탁을 받은 사항
3.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개정 2013.1.28.)

제 6 조 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교무팀장이 되고, 서기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1.8.1.)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 7 조 (경비)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